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57호(號) 1927(昭和 2)년 11월 7일 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62호(號)

1925(大正 14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(號)에 의하여 준용(準用)하도록 한 1923(大正 12)년 8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(南滿洲鐵道株式會社) 사고(社告) 제88호(號) 대철도성선 화물연대운수규칙(對鐵道省線貨物連帶運輸規則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11월 7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본칙(本則) 제2조(條)제2호(號) 만주선(滿洲線)과 철도성선(鐵道省線) 간(間: 부산[釜山] 경유[經由]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2 만주선(滿洲線)과 철도성선(鐵道省線) 간(間: 부산[釜山] 경유[經由])

만 주 선(滿 洲 線) 각(各) 역(驛: 단동역[安東驛])을 제[除]함

철도성선(鐵道省線) 각(各) 역(驛: 덕도선[德島線], 고지선[高知線], 대군선[大郡線] 및 작비선[作備線])을 제[除]함

본칙(本則) 제9조(條) 단서(但書) 중(中) 「특별소화물급화물(特別小貨物扱貨物) 및」을 삭제(削除)함.

세칙(細則) 및 설명(說明)21을 삭제(削除)함.